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의안번호 : 1223

○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○ 제 출 일 : 2023년 8월 14일

○ 회 부 일 : 2023년 8월 21일

2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
나.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※ 호우 피해 지역인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*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우선 선포('23.7.19.)

* 13개 지자체: 세종시, 충북(청주시, 괴산군), 충남(논산시, 공주시, 청양군, 부여군), 전북(익산시, 김제시 죽산면), 경북(예천군, 봉화군, 영주시, 문경시)

3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○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이하 “사망자”라 함)

○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이하 “유가족”이라 함)

나. 세목별 감면내역

○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주민세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
○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○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특별시분 및 도시지역분을 면제한다.

○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을 면제한다.

○ 취득세

-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【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】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【지방세 감면규모 등】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.

라. 기　　타

○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○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5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 개요

○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‘특별재난지역’ 선포(2023.7.19.)에 따라 재난 피해자* 지원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를 감면(면제)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* 사망자, 유가족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없을 경우 사실상 보호자))

※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,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지원사항 외에도 건강보험·전기·통신·도시가스요금·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지원사항이 추가됨(출처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2.8.22.). 붙임 참조).

<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>

구분	시군구 단위	읍면동 단위
세종	세종시	-
충북	청주시·괴산군	-
충남	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	-
전북	익산시	김제시 죽산면
경북	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	-

나. 동의안 주요 내용

○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차원의 지방세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마련한 「호우 피해 관련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」에 따른 것으로,

※ ’24년부터는 인적피해자에 대해 지방의회의결 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

-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감면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2023년도 1년간(2023.1.1.~12.31.) 과세하는 부과세목*과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

취득세를 직권으로 감면하되,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하려는 것임(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).

* 주민세(개인분), 자동차세(소유분)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

< 업무 처리 절차 >

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	→	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	→	③ 의회의결	→	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	→	⑤ 감면 지원
행안부		개발원		全 지자체		개발원→지자체		해당 지자체

○ 한편, 재무국은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대상자는 전체 사망자(48명) 중 2명이고, 전체 유가족(127명) 중 8명으로 조사되었으며, 감면 대상액은 5개 세목에 394만 3천원* 수준으로 추계하여 보고하고 있음.

* 시세 327만 7천원(재산세 특별시분 포함), 구세 66만 7천원

※ 세목별 주민세 7명, 자동차세 3명, 재산세 4명, 취득세(부동산) 1명, 취득세(자동차) 1명임.

<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 감면 현황>

(단위 : 천원)

부과세목	부과대상	납 기	감면세액			비고
			총 감면액	기감면액	감면 예정액	
합 계			3,943	2,841	1,102	
주 민 세 개 인 분	• 사망자유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(지방세법 §81①(1)가목 사업소분 포함)	8월	40	40	-	시세
자동차세 소 유 분	• 사망자 · 유가족 소유 자동차	6월,12월	754	377	377	시세
재 산 세	• 사망자· 유가족소유토지· 주택 등	7월,9월	1,334	627	708	구세
지역자원 시 설 세	• 사망자 · 유가족 (소방분)		50	32	18	시세
취 득 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~ 6개월말 內	1,766	1,766	-	시세

※ 서울특별시세 3,277천원(재산세 특별시분 포함), 자치구세 667천원

다. 지방세 감면 근거

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4조제4항)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

- 같은 법 시행령(제2조제5항)에서는 특수한 사유로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

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① ~ ④ (생략)

⑤ 법 제4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"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- 한편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에서는, 재난에 대하여 정의하면서 자연재난 예시로 호우(豪雨), 강풍 등을 들고 있고, 같은 법 제60조에서는 재난 발생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**<u>호우(豪雨)</u>**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2. (이하 생략)
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.

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- 따라서, 재난으로서 집중 호우로 인하여 세종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"특별재난지역"으로 선포(2023.7.19.)되었고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(제4조제5항)에서는, 풍수해 등 재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,

-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 취지는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제4조제4항)에 따라 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장(재무국)이 해당 유가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중 주민세 등 부과세목과 사망자 재산의 상속에 따른 신고 세목으로서 취득세 등을 감면(면제)함으로써, 범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게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○ 다만, 지난 7월 집중 호우 재난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유가족이 지방세 감면 대상 과세물건(부동산, 자동차 등)을 소유하지 못 한 경우, 본 동의안에 따른 세제 지원 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서,

-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선택적 지원보다는, 재정지원을 통하여 일률적으로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실효적 지원 방안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전 문 위 원	김 정 덕	입 법 조 사 관	최 석 훈

붙임 1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

(출처: 행정안전부 보도자료(2022.8.22.)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지원항목</th><th>지원내용</th><th>일반재난지역
(18개)</th><th>특별재난지역
(30개)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<td>1</td><td>국세 납세 유예
(기재부·국세청)</td><td>납부기한 등 연장(최장 9개월)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국세징수법」 제13조</td></tr>
<tr><td>2</td><td>지방세 납세면제·유예
(행안부·지자체)</td><td>건축물·선박·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·등록세 면제
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(최대 1년)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지방세기본법」 26조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92조</td></tr>
<tr><td>3</td><td>국민연금 납부 예외
(복지부)</td><td>연금 납부 예외(최장 12개월)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국민연금법」 제91조</td></tr>
<tr><td>4</td><td>상하수도요금 감면
(환경부·지자체)</td><td>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
또는 전액 면제 등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수도법」 제38조
「하수도법」 제65조
「지자체 조례」</td></tr>
<tr><td>5</td><td>재해복구자금 융자
(농식품부·해수부·국토부·중기부)</td><td>
<table>
<tr><th>분야별</th><th>제공기관</th><th>상환조건</th><th>이자</th></tr>
<tr><td>농업</td><td>농협</td><td>5년거치 10년상환</td><td>1.5%</td></tr>
<tr><td>어업</td><td>수협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
<tr><td>임업</td><td>산림조합</td><td>〃</td><td>〃</td></tr>
<tr><td>주택</td><td>우리은행</td><td>3년 거치 17년 상환</td><td>〃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중소기업·소상공인</td><td>일반은행</td><td>2년 거치 3년 상환</td><td>2.0%</td></tr>
<tr><td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</td><td>〃</td><td>1.9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
「주택도시기금법」,
기금운용계획
「소상공인법」 제21조
「중소기업진흥법」 제61조</td></tr>
<tr><td>6</td><td>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
(보훈처)</td><td>사망·주택전파 500만원, 주택반파 250만원
재난지수 1~80등급 50만원, 81~100등급 30만원 등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재해위로금 지급규정」</td></tr>
<tr><td>7</td><td>농기계 수리
(농협 등)</td><td>농기계 유·무상 수리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민간 자율 지원</td></tr>
<tr><td>8</td><td>지적측량 수수료 감면
(국토부, 국토정보공사)</td><td>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% 감면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
등에 관한 규정」 제23조</td></tr>
<tr><td>9</td><td>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
(국방부·병무청)</td><td>현역병 입영일자 연기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병역법」 제61조</td></tr>
<tr><td>10</td><td>국·공유재산 및 국유림
사용료·대부료 감면
(기재부·행안부·산림청)</td><td>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
사용·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·대부료 감면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공유재산법」
제24조·제34조
「국유재산법」 제34조
「국유림법」 제23조</td></tr>
<tr><td>11</td><td>본인서명사실확인서
발급수수료 면제
(행안부)</td><td>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발급 수수료(600원/통) 면제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서명확인법」 제14조</td></tr>
<tr><td>12</td><td>상속세 재해손실 공제
(기재부·국세청)</td><td>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·훼손된 경우, 상속세
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
제23조</td></tr>
<tr><td>13</td><td>과태료 징수유예
(법무부)</td><td>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
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제24조의3</td></tr>
<tr><td>14</td><td>자동차 검사기간 연장·유예
(국토부)</td><td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
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·유예</td><td>○</td><td>○</td><td>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
제4항</td></tr>
</table>

구분	지원항목	지원내용	일반재난지역 (18개)	특별재난지역 (30개)	비고
15	**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·정서 지원** (여가부)	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·양육·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·가족상담 등 지원	○	○	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의2·3·4
16	**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** (농식품부, 농어촌공사)	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※ 경영회생농지 :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	○	○	「농어촌공사법」 제24조의3
17	**공공임대 주거 지원** (국토부, LH)	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(연장 가능)	○	○	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23조의3
18	**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** (삼성·LG·위니아)	가전제품 유·무상 수리	○	○	민간 자율 지원
19	**건강보험료 감면** (복지부)	재난지수에 따라 30~50% 경감	×	○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75조 「보험료경감 고시」
20	**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** (복지부)	인명·주택·주생계수단 피해자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예외	×	○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0조
21	**고용·산재보험료 경감** (고용부)	인명·주택·주생계수단 피해 고용·산재보험료 30% 감면 ※ 고용·산재보험 각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면여부 결정	×	○	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22조의2
22	**전기요금 감면** (산자부, 전력공사)	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% 경감(주택은 100%)	×	○	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
23	**도시가스요금 감면** (산자부·가스공사)	주택피해 유형별(전파·반파·침수)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* (취사용) 전파·반파·침수 1,680원/월 등	×	○	「천연가스공급규정」 (가스공사 내부규정) 「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」
24	**지역난방요금 감면** (산자부·난방공사)	기계실 멸실·파손··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	×	○	「열공급규정」(난방공사 내부규정)
25	**통신요금 감면** (과기부, 통신사)	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~90등급에 따라 최대 12,500원 감면, 시내전화·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% 감면,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% 약 25,000원 감면	×	○	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9조
26	**전파사용료 감면** (과기부)	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	×	○	「전파법」 제67조
27	**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** (국방부·병무청)	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	×	○	「병역법」 제49조
28	**농지보전부담금 면제** (농식품부)	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※ 부지 총 면적이 660㎡이하인 경우만 해당	×	○	「농지법」 제38조
29	**TV 수신료 면제** (방통위)	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※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	×	○	「방송법」 제64조, 시행령 제44조제12호
30	**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** (우정사업본부)	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, 예금통장 재발행,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	×	○	「우편법」 제26조 「우체국예금보험법」 제7조

붙임 2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-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-
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2023. 7.

행 정 안 전 부
지방세특례제도과

「호우 피해」 “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”에 따른 사망자·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

호우 피해로 인한 **사망자 및 그 유가족**에 대해, **범정부 차원에서** 全지자체가 **지방세 감면**을 **통일적**으로 **지원** 하고자 함

1 추진 배경

○ ’23. 7. 9.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**13개 지자체***가 **“특별재난지역”**으로 **우선 선포**(’23.7.19.)

<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>

구분	시군구 단위	읍면동 단위
세종	세종시	-
충북	청주시·괴산군	-
충남	논산시·공주시·청양군·부여군	-
전북	익산시	김제시 죽산면
경북	예천군·봉화군·영주시·문경시	-

○ 해당 천재지변으로 **사망한 자**, 이로 인해 고통 받는 그 **유가족**에 대한 **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** 필요

⇨ **전국적**으로 **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**되도록 기준 마련

2 지방세 감면 추진방안

❶ 지원 근거 및 방식

○ **(법규정)** 재난·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(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§4④)

○ **(지원방식)** 全 **지방자치단체** 감면동의안에 대한 **지방의회 의결 추진**

※ ’**24년부터**는 **인적피해자**에 대해 **지방의회의결없이 법정감면토록 개정 예정**

○ **직권 감면을 원칙***으로 하되,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**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**　　* 대상자 파악 후 일괄제공 예정

❷ 감면 대상자

○ 호우 피해로 인한 **사망자(이하 "사망자"라 함)**

○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, **이하 "유가족"이라 함**)

❸ 감면 내용

○ **사망자·유가족의 지방세 부과세목**[1], 유가족의 **상속 취득세**[2]

┌ **1)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<u>1년간(2023.1.1.~12.31.)의 지방세</u>**

└ **2) 사망자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<u>유가족이 상속 취득한 경우 限</u>**

세 목		부과대상	납기	소관 지자체
①	**주민세 개인분***	• 사망자·유가족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§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특·광역시, 시·군
	자동차세 소유분	• 사망자·유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특·광역시, 시·군
	재산세	• 사망자·유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	시·군·구
②	**지역자원시설세***	• 사망자·유가족　　* 소방분 限		특·광역시, 도
③	**취득세**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말 內	특·광역시, 도

① 가족 **생계에 도움**이 되고, 주민이 **보편적으로 납부**하는 정기분

⇨ <u>주민세 개인분·사업소분(§81①1가목), 자동차세 소유분, 재산세</u>

② **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**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⇨ <u>**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**</u>

③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**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**으로 **취득**하는 경우 ⇨ <u>**취득세**</u>

3 협조사항

< 업무 처리 절차 >

① 유가족 등 명단 확보	→	② 유가족 등 지자체 분류	→	③ 의회의결	→	④ 유가족 등 지자체 통보	→	⑤ 감면 지원
행안부		개발원		全 지자체		개발원→지자체		해당 지자체

○ **(개발원)** 사망자·유가족 내역을 토대로 旣부과·부과예정 **납세지 관할 지자체*에 대상자 내역 통보**

* (정기분) 과세기준일 현재 사망자·유가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자체
(취득세) 사망자의 취득세 물건 주소지 소재 지자체 등

○ **(지자체) 사망자 및 유가족**에 대한 **'23년 정기분 지방세 면제 조치*, 유가족**에 대한 **상속분 취득세가 면제** 지원될 수 있도록

*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旣부과된 지방세는 감액·환급 조치

⇒ 신속한 **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회의결 추진**

※ 지방의회 의결이 늦어지는 경우 고지유예 등을 실시하여 사망자 가족의 부담이 없도록 先조치 필요

참고 **지방세 감면동의안 (표준안)**

✓ 각 지자체에서는 본 감면 의결안 활용시, 관할 세목만 기재
✓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可

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(표준안)

○○도지사(시장)가 제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(2023.7.19.)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○○도(시)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1. 감면대상자 :

1)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(**이하 "사망자"라 함**)

2)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(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, **이하 "유가족"이라 함**)

2. 세목별 감면내역

가. 주민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(개인분, 사업소분(「지방세법」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)을 면제한다.

나.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

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다.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, 이하 같다)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라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

-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.

마. 취득세

-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,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

3. 기타

가.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나.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